

#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증명 신청서

대상차량	등록번호(차대번호)	
	사용본거지	
	소 유 자	
발급용도	부 활 용	
	증 명 용	

자동차등록규칙 제 40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년      월      일

신청인  주          소  
          성          명  
          주민(사업자)번호

- 구비서류 : 1. 부활용인 경우 - 자동차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
              2. 증명용인 경우 -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
              3. 제3자가 발급받을 경우 - 위임장  
              4. 부활용제발급인 경우 - 각서

## 위 임 장

위임하는 자	성 명		주민등록번호	
	주 소			
위임받는 자	성 명		주민등록번호	
	주 소		연락처	

위와 같이 자동차 말소등록사실증명서 발급 권한을 위임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년      월      일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위임자:

※ 첨부 : 인감증명서 1 부.

※ 주의 :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시 형법 제231조 및 제 232조에 규정된 사문서 위변조에 해당 됨

## 각 서

기 발급한 증명서를 보관 부주의로 인한 분실로 재발급 받고자 하오며, 본 증명서는 발급받은 용도로 성실히 사용 할 것이며 이로 인한 민·형사상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.

          년      월      일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각서인 :